

## 온사람교양교육대학 규정

제정 2017.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온사람교양교육대학(영문명: The Onsaram Liberal Education Institute of Kyungdong University)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온사람교양교육대학은 조화로운 자아와 바른 인성으로 참된 삶을 영위하고, 창의적 사고와 자강불식의 노력으로 책임과 사명(Man of Mission)을 다하는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경동대학교 인재상 완성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3조(업무) 온사람교양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의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에 관한 발전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사관리
4.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5. 교양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제4조(조직) ① 온사람교양교육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온사람교양교육대학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온사람교양교육대학에 교양교육센터를 두고, 필요시 기초교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온사람교양교육대학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교직원 및 조교를 둔다.

제5조(교양교육위원회) ① 온사람교양교육대학의 학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양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양교육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별교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개별교과협의회는 운영 취지와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과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교과 또는 유사 학문 단위의 교과군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일
2. 한 교과에 여러 교수가 담당할 경우, 교수의 독창적인 교과목의 교수권을 존중하면서, 교양교과의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 내용, 과제, 교재 등에 대한 정보 교환, 공유 등을

협의하는 일

3. 각 교과별 교양교과의 자율적인 교과교수 배정, 교과교육 진행, 자체평가, 교과 포럼(워크숍) 등을 협의하는 일

⑤ 개별교과협의회는 인문과학개별교과협의회, 외국어개별교과협의회, 명심보감개별교과협의회, 컴퓨터개별교과협의회, 자연과학개별교과협의회, 사회과학개별교과협의회, 융복합개별교과협의회, 취·창업개별교과협의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교육과정 및 운영) 교양교육과정의 개설,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교과과정 편성 규정, 수업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등 경동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양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